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8. 3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8.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8.23.
 -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5.8.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직 부구청장(3급)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 본청 정원총수를 감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중 구 본청 정원의 총수 1명 감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94.3.16 개정된 지방자치법부칙제5조에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7.1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부칙제3항에는 마포구 부구청장의 직급은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본청 정원총수를 1명 감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1995.8.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정원승인에 따른 지방직 부구청장(3급)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서울

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본청 정원총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중 구본청 정원의 총수1명 감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15조, 제103조
 -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 부칙제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703호) 부칙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97호)부칙제2조제1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906명”을 “90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구본청(구청) : 906명	1. 구본청(구청) : 905명	1. 구본청(구청) : 905명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4.